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9. 8
행정재무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8월 8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4년 8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7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4. 9.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94. 7. 21 우리구 아동 상담원(별정직 8급상당)이 아동복지 지도원(별정직 7급상당)으로 정원 조정되었으나, 아동복지 지도원(별정직 7급상당)의 임용자격 기준이 없어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 지도원(별정7급상당)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직무내용

-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 아동의 일시보호
-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지도
- 청소년문제 지도상담

○ 임용자격

- 당해분야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8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대현)

현행 조례상 아동복지 지도원 7급상당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과 임용자격 기준이 없어 이를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별표1의 제5호와 동일하게 신설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1
----------	-----

제출년월일 : '94. 8.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 정 이 유

'94. 7. 21. 우리구 아동 상담원(별정직 8급 상당)이 아동복지지도원(별정직 7급상당)으로 정원 조정되었으나, 아동복지지도원(별정직 7급상당)의 임용 자격 기준이 없어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지도원(별정7급상당)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직무내용

-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 아동의 일시보호
-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지도
- 청소년문제 지도상담

○ 임용자격

- 당해분야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8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3.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제4조 제3항 별표 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현행					개정				
직명(직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직명(직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지도원)	8급 상당	•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 아동의 일시보호 •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지도 • 청소년문제 지도상담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2년이상 당해분야 관련학과를 전공한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이상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예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조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지도원)	7급 상당	•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 아동의 일시보호 •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지도 • 청소년문제 지도상담	1. 당해분야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2.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8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3.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조
						8급 상당	•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 아동의 일시보호 •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지도 • 청소년문제 지도상담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2년이상 당해 분야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이상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예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2.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의 “아동복지지도원(청소년지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명(직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지도원)	7급 상당	•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 아동의 일시보호 •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 지도 • 청소년문제 지도상담	1. 당해분야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2.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8급상당)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
	8급 상당	•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 아동의 일시보호 •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 지도 • 청소년문제 지도상담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2년이상 당해 분야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5년이상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예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보건사회 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